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설 30312- ✓	전결규정 4 조 항	(전화번호 731-6349)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5. 10.	1985. 10. 16	
보존연한	영 구	1985. 10. 16	
보 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전결	법무담당관 김사별
	시설계획과장	233	
	가로계획2계장		
기안책임자	김영환	85. 10.	

경 수 함	유 신 조	사안 참조
계 목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및 지적승인	고시제 203호

제1안 내부결재

1. 관내 풍납동 361의10-오금동36,296의1일대 하천에 대하여 올림픽토목담당관 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요청이 있어 내용 검토한바, 성내.둔촌동일대 저지대 침수방지및 운동장 단지내를 통과하는 하천을 시설기 위한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13조 와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및 시행코자합니다.

2. 본건은 우리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85.9.17)에서 심의, 하천이 아닌 호수지역은 하천시설에서 제외토록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및 지적승인	1985. 10. 16 203 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하천)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및 제13조 2항 동법시행령 제6조 1항 1호 나목 규정에 의거 결정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익를 고시한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10.

서울특별시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폭원 (M)	연장(M)	비고
신설	하천	강동구풍납동361의10-오금동36,296의1	40-120	5,000.	지적승인
					오금동374의1 -오금동269의1 36칸 지적승인 L=2,990M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제3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계획과장

제목 : 같음

1.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하천)을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 1부.

제4안

수신 : 총무처장관(시:공보관)

발신 : 시(국)장

제목 : 관(시)보 게재의뢰

1. 다음과 같이 관(시)보 게재요청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및 지적승인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라. 게재내용 : 별첨 고시문

첨부 : 고시문 사본 2(1)부.

4411



도시계획국장

제5안

수신 : 올림픽준비단장(올림픽토목담당관)

제목 : 같음

1. 올토30310-230호(85.6.20)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요청하신 풍납동 361의10-오금동 36,296의1일대 하천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3. 사업시행전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및 농지전용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제6안

수신 : 강동구청장(도시정비과장)

제목 : 같음

1. 귀구관내 도시계획사항이 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오니 관계도면 정리하여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착오없이 바람.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제7안

수신 : 수신처참조

발신 : 과장

제목 : 같음

1.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하천)을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끝.

수신처 : 치수과장, 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과장

